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안내문

2020. 11. 9. 대한체육회 기획부 회장선거준비TF팀

현재 기준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대한체육회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선거사무 관련 주요일정

-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2021. 2. 19.(금)
-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2021. 2. 18.(목)

실시사항	일자(기한)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조문
선거관리 위탁신청 (완료)	2020-08-22(토)	체육회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기간 시작일	2020-08-22(토)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 전 180일~선거일	법§34, §35 규정§29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2020-08-22(토)~ 2021-01-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앙선관위)	위탁신청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10①
대한체육회, 추천단체의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서 제출기한	2020-11-20(금)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정관§24의2 규정§15
임직원의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 홍보하는 행위 금지 기간	2020-11-20(금)	체육회	임기만료일 전 90일~선거일	규정§31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 구성 기한	2020-11-30(월)	체육회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규정§2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2020-12-10(목)	위원회 →추천단체	임기만료일 전 70일까지	규정§9
선거인 후보자 추천 완료	2020-12-20(일)	추천단체 →위원회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규정§9
선거인 후보자명부 작성 개시	2020-12-21(월)	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규정§12
선거인 후보자명부 작성 종료	2020-12-23(수)			
선거일 공고 기한	2020-12-23(수)	중앙선관위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	2020-12-24(목)	위원회	2일의 범위 안	규정§13
선거인명부 작성 종료(선관위 송부)	2020-12-25(금)			
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2020-12-26(토)	위원회	3일간	규정§14
선거인명부 열람 종료	2020-12-28(월)			
후보자 등록 시작	2020-12-28(월)	후보자 →중앙선관위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매일09시~18시)	법§18①
후보자 등록 마감	2020-12-29(화)			
선거인명부 확정(선관위 송부)	2020-12-29(화)	위원회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규정§14
후보자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	2020-12-30(수)	후보자 →경기도선관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세칙§11
선거기간 개시(선거운동 시작)	2020-12-30(수)	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법§13②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개시	2020-12-30(수)	위원회	선거기간 개시일(오전9시부터)	규정§14
선거운동기간	2020-12-30(수)~ 2021-01-17(일)	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선거일 전일	규정§19
선거기간	2020-12-30(수)~ 2021-01-18(월)	위원회	20일	규정§6
후보자 정책 토론회	선거기간 중	위원회	1회 이상	규정§21
선거일(투개표), 후보자 소견발표	2021-01-18(월) 예정	경기도선관위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규정§7 §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행위원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 제출

○ 【제15조제2항】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 대 상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

※ 상기 체육단체(대한체육회, 추천단체)에 소속되지 않은자는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불요

- 제출기한: 2020. 11. 20.(금) 오후 6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대한체육회 사무처 접수 확인 시간 기준
- 제출양식: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필첨

<임원확인서 발급기관·방법>

- 발급기관: 소속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신청방법: (체육회)본인 방문(유선 등으로 사전신청 가능) ☎ 02-2144-8043
(이외 추천단체) 해당 단체에 문의
- 처리기한: 단체 상황에 따라 발급 지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또는 확인하여야 함.

- 제 출 처: 대한체육회 기획부 회장선거준비TF팀(☎ 02-420-43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84, 3층

○ 【제15조제7항】 사직서 제출

- 대 상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추천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 제출기한: 2020. 11. 20.(금) <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제출양식: (체육회)사직원 (이외 추천단체) 해당 단체에 문의
- 제 출 처: 소속단체 사무처

□ 후보자등록

- 기 간: 2020. 12. 28.(월)~12. 29.(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 신 청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부사항 별도 안내

□ 선거운동 기간

- 【제19조】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20. 12. 30.)~선거일 전일(2021. 1. 17.),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
- ※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선거운동 가능 ☞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 선거운동 방법

○ 총괄표(후보자 기준)

구분	'16년 선거 규정	현재 규정
선거공보	가능	가능
전화(전화 또는 문자) *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전송 불가	가능	가능
정보통신망(이메일, SNS 등)	가능	가능
선거사무소의 게시물 설치 및 변경	관련 근거규정 없음	가능
윗옷 및 어깨띠	불가	<u>가능(신설)</u>
명함	불가	<u>가능(신설)</u>
<u>후보자 정책 토론회</u>	관련 근거규정 없음	<u>가능(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주최: 1회 이상 · 1회의 토론회 · (+)선거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개최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외부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단, 후보자 동의 필요)
선거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가능	가능

○ 【제21조】 주체별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위원회가 주최하는 1회 이상의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7.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8.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사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3.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시행세칙】 선거운동 세부 방법

선거운동	세부내용
① 선거공보 이용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등: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총 8면 이내 1종 ▪ 제출 기관: 선관위 ▪ 제출 기한: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기한 내 미제출, 규정으로 정해진 공보 형식 및 종류 위반 ☞ 발송할 선거공보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철회 불가

선거운동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 → 선거인 우편 송부 ▪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선관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② 전화 이용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 가능 ▪ 문자 메시지로 음성·화상·동영상 등 전송 불가 ▪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 불가 ▪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불가
③ 정보통신망 이용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선거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또는 동영상 등 게시 가능 ▪ 전자우편 전송, SNS 활용 가능
④ 윗옷, 어깨띠, 명함 이용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기간 중 윗옷, 어깨띠 착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명함 (크기)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장소) 공개된 장소에 한함 (방법) 선거인을 포함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 지지 호소 *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 불가
⑤ 후보자 정책 토론회 (위원회 주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1회 이상 개최 ▪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 불가 ▪ 위원회는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그 녹화물을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 ▪ 기타 토론회: 모든 후보자 개최동의 필수
⑥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당일 투표 개시 전, 기호 순에 따라 10분의 범위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까지 투표소 미도착 ☞ 소견발표 포기 간주 ▪ 체육회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중계와 이를 위한 홍보 가능, 소견발표 영상 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체육회 선거 홈페이지에 게시

□ 금지행위

- **【제22조】 제21조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 불가**
- **【제23조~제35조】 선거와 관련한 금지행위 대폭 확대 반영으로 선거 공정성 강화 및 선거 부정행위 억제를 위한 경각심 부여**
 - 위탁선거법 개정('16.12.)으로 금지행위에 처벌조항 적용 강화
 - (종전)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상 제재조치만 적용 → (변경, '16.12~) 위탁선거법 상 의무금지행위의 경우 법적처벌(벌금형~징역형)까지 적용

금지행위	주요 내용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가족, 소속단체)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제공, 제공의사 표시 및 약속 금지 ▪ 후보자 등록 저지 및 사퇴 목적으로 상기행위 금지

금지행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의 금품 운반 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 비방 금지
호별방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별 방문 금지,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금지 공개된 장소 방문은 가능
기부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관련단체에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약속)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수령), 지시·권유·알선 금지
정당 등 표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소견발표)시 특정 정당 지지·반대·당원경력 표방 금지
사위등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명부 허위작성 및 선거인명부 고의 누락 금지
사위투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하여 투표하는 행위 금지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관위, 선거운영위 등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 행위 금지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등 또는 선거인명부 은닉·파손 등 금지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 기획 참여, 실시 관여 금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임기만료일 전 90일(또는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의사 제출시)부터 임직원의 아래 해당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행사 개최 및 후원 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사업실적·활동상황 등 홍보물 발행 금지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 출장 금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금지
선거일 후 답례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이후 당선축하·낙선위로목적의 금전·물품·향응 제공 및 선거인 모임 금지

※ 세부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시행세칙 참조

[별지 제3호서식]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